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.

발 의 자 : 김종양 · 서천호 · 박형수
김태호 · 이종욱 · 박준태
한기호 · 박충권 · 박덕흠
이달희 · 이상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·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,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제9호).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, 납품 품목의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31조제1항제9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계약을 이행할 때에 「지방회계법」 제35조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급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

마.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되었던 자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제1항제9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금급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· 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·
제3항에서 같다)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(이하 “부정당업자”라 한다)에
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
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
여 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가. ~ 다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⑦ (생략)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9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계약을 이행할 때에 「지방회계법」 제35조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급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

마.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되었던 자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